



정책토론회 2016

「경기도 및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14:00~15:50
-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주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주최 : 경기도

프 로 그 램

- ◎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14:00~15:50
- ◎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 주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 주최 : 경기도
- ◎ 문의 : 031) 220-3974 젠더거버넌스센터

- **개회 및 국민의례**

14:00~14:35

- **개회사**
- **인사 말씀 및 격려사**

- **주제 발표**

1.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경기도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
정형욱(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과정과 내용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14:35~15:15

- **지정 토론**

- 권미나 (경기도의회 의원)
- 정미자 (고양시 여성정책 팀장)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5:15~15:30

15:30~15:45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45~15:50

- **폐회**

목 차

주제발표

-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3·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기도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3 2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과정과 그 내용 54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지평토론

-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시·군 조례의 방향16
권미나 <경기도의회 의원>
-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민관거버넌스 개정 추진56
정미자 <고양시 여성정책 팀장>
- ‘성평등 기본조례’개정, 협치가 필요한 지점이다 71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

- 박선영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

박 선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여성발전기본법(이하 ‘여발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된 지 1년이 지났다. 여발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여발법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국내외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중심의 정책접근에서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발법은 여전히 전자에 치중되어 있어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제명 역시 여성정책을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으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성정책이 성차별 구조개선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이 아닌 여성의 지위 향상만을 목표로 한다고 읽힐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정의, 범위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새로운 여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에 2009년에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발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여발법 전부개정안으로 ‘성평등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여발법 개정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도 2010년에 여발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양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성평등기본법안’과 ‘여성정책기본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발법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는 다시 본격화되어 ‘성평등기본법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과 ‘양성평등기본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법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는 여발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각 지자체 중심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성평등기본조례는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개정된 것으로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에 맞춰 새롭게 개정될 필요가 있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모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시·군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기본법과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양)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II. 기본법과 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현행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기본법’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이나 법 이론에 의하여 선형적으로 정의된 바 없다. 통상적으로 ① 사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실질적 정의), ②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형식적 정의), ③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이 경우 기본법은 헌법과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기본법 등이 이에 속한다)로 쓰인다.¹⁾

‘양성평등기본법’은 이 중 첫 번째 정의 - 기본적 원칙과 정책의 기준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갖는 ‘양성평등기본법’은 ① 실생활에 있어서 광범위

1)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20쪽

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법령들의 일련의 법, ② 같은 위치에 놓인 법령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경우, ③ 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령 등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²⁾

‘양성평등기본법’ 과 같은 정책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 체계를 정하고,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시도하며, 정책의 일관상계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을 통제하며,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³⁾.

현재 ‘기본법’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법률은 2016년 현재 60여개가 넘는다. 지금까지 제정된 기본법을 그 제정배경과 목적, 규정내용 등으로부터 유형화하면 이념형(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정책형(각각의 행정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상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 대책형(일정한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개혁추진형(국정상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⁴⁾, ‘양성평등기본법’ 은 이념형과 정책형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혀 새로운 정책분야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래 정책을 발전시키고 중요도를 부각시키며 시책의 종합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기본법’ 의 성격은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중앙정부)의 정책기본법 제정과 그 방향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례는 국가의 정책기본법을 준용하고 지역적 특색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부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앙정부)의 정책기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제정되거나 개정된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정책적 협의를 통해 국가책무를 달성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법이 정책목표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한계를 가지는 반면

2) 조정찬,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제268호(1989. 6.), 17면, 이하 박영도(2006), 앞의 책, 19쪽에서 재인용

3) 박영도(2006), 앞의 책, 24~34쪽

4) 박영도(2006), 앞의 글, 119~120쪽

조례는 기본법의 구체적인 정책시행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평가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진다.⁵⁾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조례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Ⅲ.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⁶⁾

1.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

양성평등기본법은 총 6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칙)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발법과 비교해 볼 때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구분한 점,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을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 참여,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으로 4개의 절로 구분한 점 등은 정책기본법 체계에 보다 부합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제7조~제14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제10조)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제11조~제13조)

5)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참조.

6) 박선영,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의의와 내용과 과제”.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제15조~제28조의2)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제14조~제19조)
	제2절 양성평등 참여(제20조~제28조)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제29조~제34)
	제4절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제35조~제41조)
제4장 여성발전기금(제29조~제31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제42조~제44조)
제5장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제32조~제34조)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제45조~제51조)
제6장 보칙(제35조~제36조)	제6장 보칙(제52조~제53조)
부칙	부칙

이상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그 내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부분(I)과 국가 등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부분(II),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의 체계를 정한 부분(III), 양성평등정책으로 주로 추진해야 할 목표내용을 열거한 부분(IV),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운용·사용에 관한 부분(V),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VI)과 권한 위임, 국회보고에 관한 규정(VII)으로 구분된다.

분류	조문		주요내용
I. 총론	제1조	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제2조	기본이념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보장
	제3조	정의	양성평등, 성희롱, 사용자 개념의 정의
II. 책무 등	제4조	국민	-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 -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제5조	국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제6조	타법과의 관계	양성평등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 본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아야 함
III. 양성 성	계획 수립	제7조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분류		조문		주요내용	
평등정책 기본계획 & 추진체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제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연도별 시행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수립·시행 여성가족부장관의 조정, 점검, 평가	
		제9조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계획 수립·시행 단계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협조	
	실태조사 등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해야 하고 공표할 수 있음. -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접근 및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	
		정책 추진 & 조정	제11조	양성평등 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제12조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소속,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 -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제13조		양성평등 정책책임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 필요한 전담 전문 인력 배치	
	IV. 양성평등 계획 기본시책	정책 추진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 의무 부과
			제15조	성별영향 분석평가	법령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의무 부과
			제16조	성인지예산	인적(人的)통계를 작성 시 성별로 구분한 통계 산출, 관련 기관에 보급
제17조			성인지 교육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	
제19조			국가 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매년 조사·공표해야 함.	
참여		제20조	적극적 조치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제21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제22조	공직 참여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제23조	정치 참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실현 -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	

분류	조문	주요내용	
	제25조	모·부성 권리 보장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야 함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 마련, - 이를 위한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 마련	
	제27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28조	여성인재 관리·육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인권보호 & 복지증진	제29조	성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방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제33조		복지증진 -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 강구 -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 마련	
제34조		건강증진 -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양성평등 문화확산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과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 반 노력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 -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실시 -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실시 노력	

분류		조문	주요내용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노력
		제38조	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함
		제39조	여성친화 도시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 노력
		제40조	국제협력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노력 -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지원 -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여성 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 노력.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 제출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V. 양성 평등 기금		제42조	설치 재원-운용 / 금융기관에의 위탁 가능성
		제43조	용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제44조	회계기관 여성가족부 내, 위탁기관에서의 회계담당자
VI. 양성 평등 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 과 단 체 등 의 지 원	한국양성 평등교육 진흥원	제45조	관련기관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 설치·운영
		제46조	한국양성 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여성인력 개발센터	제47조	설치·운영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제48조	지정취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분류		조문		주요내용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	청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하여야 함
	여성사 박물관	제50조	설립·운영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영리 단체	제51조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VII 보칙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제53조	국회보고	-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후 국회에 제출 -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

2.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내용

이하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총칙

제1장 총칙은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법제처, 2012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총칙규정을 여발법의 총칙규정과 비교하면 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와 특징이 보인다.

첫째, 법의 지향점이 고 할 수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발법의 목적인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을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경하고, 여발법의 기본이념인 ‘여성발전’ 대신 성차별 해소,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등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문화하였다.

둘째, 양성평등의 개념 정의를 최초로 법정화하고,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처음으로 법정화 하였다. 또한, 성희롱 정의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조건형 성희롱을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국가 등의 책무의 범위와 내용을 수정하였다. 여발법은 국민에게 남녀평등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양성평등기본법은 국민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함과 함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어 온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앞으로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양성평등기본법 제2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조정·집행·점검 등을 정한 부분이다. 이 장은 기본 정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점검되는지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발법과 비교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의 실효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시행 계획 점검과 조정 요청, 그리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확대와 기능을 강화하였다. 여발법상의 여성정책조정 회의 대신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등 양성평 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양성 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유엔여 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양성평등책임관 지정을 광역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지정을 의무 화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대하였다.

넷째, 5년 주기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법정화 하여 이 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제14조~제41)의 기본시책은 여성가족부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 체나 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과제일 뿐 아니라, 이 후 수립되고 시행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발법 제정 이후 여성정책의 발전 내용(성 주류화, 여성참여확대, 여성인 권 및 복지증진 등)을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담아내려고 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주류와 조치를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에게 성주류 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법정화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 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을 확인하는 규정과 함께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 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지통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적

(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통계를 산출보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였다.

둘째, 정치, 정책결정과정, 공직 등의 남녀의 균형있는 참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남녀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셋째, 여발법상의 고용평등을 넘어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에게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여발법상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일-가정양립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을 위한 시책의 범위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으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사항을 모성에 한정하지 않고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여 성차별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덟째,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남녀 동등한 참여 등에 명문화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

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양성평등기금

현행 여발법 상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 기금의 용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은 여발법과 비교해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인다.

첫째,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보칙

보칙 규정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칙 규정이라고 한다(법제처, 2012년).

여발법과 비교해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보칙 규정의 변화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IV.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방향

1. 조례명

조례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모법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여발법 개정 이전에도 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된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조례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누락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 즉 여성발전 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은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 또한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의 범위와 대상 등이 모호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조례의 성격이 정책기본조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명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상을 전환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성주류화 정책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조례명도 가능하다.

2. 총칙

총칙규정은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자치법규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 등의 책무 등으로 구성된다.

가. 목적 규정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00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양성

평등기본법 시행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이해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에 “여성의 권의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이념

기본이념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목적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규정과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나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에는 목적규정과 달리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기본이념에는 여성정책추진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면 된다. 기본이념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성평등 촉진, 성차별 의식과 관행 해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이다.

다. 시장 또는 군수의 책무규정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하고, 필요한 체제 정비와 재정 마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장 또는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시민에게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책무화할 필요가 있다.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가.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수립 조항 관련해서는 시행계획에 담을 내용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른바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 + 성주류화 정책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의 심의·조정·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임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당연직 위원을 시정 또는 군정의 성주류화를 위해 양성평등업무 관련 뿐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가 바람직하고, 시장 또는 군수와 위촉직 중 호선되는 자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위원회의 위상과 실행력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인력풀과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면 (양)성평등위원회에 기금의 심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포함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고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3. (양)성평등 정책

(양)성평등정책의 시책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제41조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시책, 성주류화 조치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양)성평등기금

기금이란 정부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원칙에서 벗어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탄

력성이나 효율성 및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제도의 하나이다.

그 동안 운영되어 온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금 확보를 통해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그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예산이 중앙과 비교해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여성단체의 활동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컸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이 변동됨과 동시에 그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뿐 아니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

- 정형욱 I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근거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조례제정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함.

○ 이에 경기도는 2000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하였음. 이후 2009년에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개정 하였음.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 보다 앞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 1995년 12월 제정된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은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었음. 그러나 국내외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경기도는 이를 반영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를 전면 개정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지역법이라고 할 수 있음(행정자치부 외, 2005).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그 성격상 법률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특히, 경기도 지역의

성평등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의 성평등 정책이 균등하게 발전되어야 함. 광역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에 다음에서는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분석하고자 함.

2. 조례명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2016년 7월 현재 <표 1>와 같이 18개 시군이며, 13개 시군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 이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

○ 현재 31개 시군의 기본조례 명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17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성평등 기본조례가 13개 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1개 시군으로 나타남. 조례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유형은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된 유형임. 이에 해당되는 시군은 수원시, 구리시, 시흥시, 의왕시, 용인시, 김포시로 6개 시군임. 이 유형의 특징은 조례명이 제정 당시에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였다가, 경기도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자 이를 반영해 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자 다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음.

○ 두 번째 유형은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된 유형임. 이에 해당되는 시군은 성남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10개 시군임. 이 유형의 특징은 조례명이 제정 당시에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였다가, 현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된 경우임. 이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은 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조례명을 변경했다는 특징이 있음.

○ 세 번째 유형은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된 유형임. 이에 해당되는 시군은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오산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화성시로 11개 시군임. 이 유형의 특징은 조례명이 제정 당시에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였다가, 경기도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자 이를 반영해 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한 경우임. 또 다른 특징은 고양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음. 이들 시군의 경우 첫 번째 유형과 같이 조례 개정 시 조례명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네 번째 유형은 기타 유형으로 평택시, 과천시, 포천시, 양평군 4개 시군임. 평택시와 양평군은 조례 제정 당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음. 과천시는 조례 제정 당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정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조례를 개정해 현재 조례명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되었음. 포천시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음.

○ 현재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조례명을 사용하는 시군은 총 13개 시군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도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조례명을 유지한 시군은 고양시가 유일함. 이러한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이후에도 조례명을 성평등 기본조례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군에서도 모법의 명칭을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조례를 개정한 시군에서는 대부분 조례의 목적을“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법의 목적을 총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이념을 별도로 규정한 지역은 없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서는“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표 1> 조례명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개정 여부

구분	유형	조례명 변경	최근 개정일	양평법 반영 개정
수원시	1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1-13	○
성남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0-12	○
의정부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3-12-27	×
안양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5-4-24	×

구분	유형	조례명 변경	최근 개정일	양평법 반영 개정
부천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4-10-13	×
광명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3-10-8	×
평택시	4	성평등 기본조례	2014-8-14	×
동두천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6-05-23	○
안산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5-5-18	×
고양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6-7-5	○
과천시	4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1-13	○
구리시	1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2-29	○
남양주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2-31	○
오산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5-6-1	×
시흥시	1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2-8	○
군포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2-31	○
의왕시	1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0-30	○
하남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4-11-27	×
용인시	1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7-28	○
과주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4-12-30	×
이천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3-11-14	×
안성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2-21	○
김포시	1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성평등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7-31	○
화성시	3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성평등 기본조례	2014-12-05	×
광주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9-24	○
양주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6-3-7	○
포천시	4	여성발전 기본조례	2014-12-29	×
여주시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2-31	○
연천군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6-7-8	○
가평군	2	여성발전 기본조례 → 현)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9-30	○
양평군	4	성평등 기본조례	2015-1-28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3. 용어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의 정의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역은 23개 임. 지역에 따라 용어는 양성평등/성평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의 차이는 없음.

<표 2> 용어정의: 양성평등/성평등

구분	용어	내용
수원시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를 따른다.
성남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시	성평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안양시	성평등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	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광명시	성평등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평택시	성평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동두천시	-	-
안산시	-	-
고양시	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과천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구분	용어	내용
구리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오산시	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시흥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군포시	-	-
의왕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하남시	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평화·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파주시	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	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안성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양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	성평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평주시	-	-
양주시	-	-
포천시	-	-
여주시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구분	용어	내용
연천군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가평군	-	-
양평군	-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조례에서 성차별을 정의하고 있는 시군은 13개 지역임. 성남 시를 제외하고 12개 지역은 모두 성차별의 개념에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괄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성별 뿐만아니라 임신, 출산 및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성차별의 개념에 포괄해 금지하고 있음.

- 직접차별이란 특정 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불리한 대우'란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성을 근거로 한 직접차별이 성립함.

- 간접차별이란 성이 아닌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했지만 그로 인해 특정 성의 구성원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때 인정됨. 여기서 중립적인 기준이란 표면적으로 성이 아닌 '성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준, 규정, 조건, 관행 등을 의미함.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로 중립적 기준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성에 의한 간접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중립적 기준은 주로 혼인여부, 신체조건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음.

<표 3> 용어정의 : 성차별

구분	내용
수원시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남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

구분	내용
의정부시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양시	-
부천시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광명시	-
평택시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두천시	-
안산시	-
고양시	-
과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산시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및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용인시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주시	-

구분	내용
이천시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안성시	-
김포시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한다.
화성시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시	-
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평군	-
양평군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4. 시장·군수의 책무/시민의 권리와 의무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즉,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짐.

○ 한편,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의무만을 규정했으나,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즉,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짐. 또한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경기도내 31개 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22개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7개 시군에서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시장/군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지 않은 시

군도 2개 있음. 한편, 19개 시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무만을 규정한 시군은 8개 시군이고, 시민의 권리만을 규정한 곳은 1개 시군임. 3개의 시군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따로 명시하지 않음.

<표 4> 시장·군수/시/시민의 책무

구분	시장/군수의 책무	시의 책무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수원시	○	-	○	○
성남시	-	○	○	○
의정부시	○	○	○	○
안양시	○	-	-	○
부천시	○	-	○	○
광명시	○	-	-	○
평택시	○	-	○	○
동두천시	○	-	-	-
안산시	-	○	-	○
고양시	-	○	○	○
과천시	○	-	○	○
구리시	○	-	○	○
남양주시	○	-	○	○
오산시	○	-	○	○
시흥시	-	-	-	○
군포시	-	-	-	-
의왕시	○	-	○	○
하남시	-	○	○	○
용인시	○	-	○	○
파주시	○	-	-	○
이천시	○	-	○	○
안성시	○	-	-	-
김포시	○	-	○	○
화성시	○	-	○	○
광주시	○	-	○	○
양주시	○	-	○	-
포천시	-	○	-	○
여주시	○	-	○	○
연천군	-	○	○	○
가평군	○	-	-	○
양평군	-	○	-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5.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동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하 종전 계획)을 법 개정에 따라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하 제1차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명시하였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시도별 양성평등정책에 따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정형욱, 2015).

○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시군은 24개 지역임. 시행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을 추진목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수원시 외 8개 시군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표 5>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포함사항

구분	기본방향	추진목표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 밖에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시책			
수원시	○	○	○	○	○	○	○	○
성남시	○	○	○	○	-	○	-	-
의정부시	○	○	○	○	○	○	-	○

구분	기본방향	추진목표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여성친화도 시 조성	그 밖에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시책			
안양시	○	○	○	○	○	○	○	○
부천시	○	○	-	○	○	○	-	○
광명시	○	○	○	○	○	○	○	○
평택시	○	○	○	○	○	○	-	○
동두천시					-			
안산시	○	○	○	○	-	○	-	○
고양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파천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구리시					-			
남양주시	○	○	○	○	-	○	-	○
오산시	○	○	○	○	○	○	-	○
시흥시					-			
군포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의왕시					-			
하남시	○	○	○	○	○	○	-	○
용인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파주시	○	○	○	○	○	○	-	○
이천시	○	○	○	○	○	○	-	○
안성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김포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화성시	○	○	○	○	○	○	-	○
광주시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양주시					-			
포천시	○	○	○	○	○	○	-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	○	○
양평군	○	○	○	○	○	○	-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6.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대신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함. 양성평등정책은 단지 여성가족 관련 부서 업무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점점 융·복합적 정책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정형욱, 2015).

○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대부분 조례명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후 조례를 개정한 지역 18개 중 16개 시군은 양성평등위원회이며, 구리시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고양시는 성평등위원회임.

○ 위원회 구성은 11명에서 25명까지이며, 위원의 자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원이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고, 여성단체 또는 단체 추천 시민 등으로 구성됨.

<표 6>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구분	명칭	인원	위촉직 위원 자격					
			여성/사회단체	의원	전문가(정책or기금)	정책개발능력자 및 사회활동경력자	단체추천시민	기타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20명 이내	○	○	○	-	-	○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의정부시	성평등정책위원회	25명 이내	-	○	○	○	-	-
안양시	성평등정책위원회	15명 이내	-	○	○	-	-	-
부천시	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광명시	성평등정책위원회	15명 이내	-	○	○	-	-	-
평택시	성평등위원회	12명 이내	-	○	○	○	-	-
동두천시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안산시	성평등정책위원회	15명 이내	○	○	○	-	-	○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20명 이내	-	○	○	-	-	-
과천시	양성평등위원회	11명 이내	○	○	○	-	-	○
구리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11명 이내	-	○	○	-	-	-
남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20명 이내	○	○	○	-	-	○

구분	명칭	인원	위촉직 위원 자격					
			여성/ 사회단체	의원	전문가 (정책or기 금)	정책개발능력 자 및 사회활동경력 자	단체 추천 시민	기타
오산시	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시흥시	양성평등위원회	13명 이내	-	○	○	-	-	-
군포시	양성평등위원회	13명 이내	-	○	○	-	-	○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하남시	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파주시	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이천시	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	13명 이내	○	○	○	-	○	○
김포시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화성시	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20명 이내	○	○	○	-	-	-
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11명 이내	-	-	○	-	-	-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	11명 이내	○	○	○	-	-	-
연천군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	15명 이내	○	○	○	-	-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7.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도 변경되었는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임(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 한편, 부칙 제5조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은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기금의 명칭은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임. 다만, 동두천, 시흥, 양주, 가평은 (양)성평등 조례에 기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금의 용도는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각 조례에 명시된 범주만으로 기금의 용도를 일관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 즉, 구체적인 사업단위로 용도를 명시한 지역도 있고, 보다 큰 틀에서 용도를 명시한 지역이 있기 때문임. 기금의 용도에 대한 범주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표 7>은 각 조례에 명시된 용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분한 범주에 따라 표시한 것임.

<표 7> 양성평등기금 용도

구분	명칭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의정부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안양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부천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광명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	○	-	○	-	-	-	-	○	○

구분	명칭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등 극복 정책 사업 지원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동두천시											
안산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고양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과천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구리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오산시	성평등기금	○	○	-	○	-	-	-		○	○
시흥시											
군포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하남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용인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과주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이천시	성평등기금	○	○	-	○	○	○	○	○	-	○
안성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김포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화성시	여성발전기금	○	○	○	○	○	○	○	○	-	○
광주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양주시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	○	-	○	-	-	-	-	○	○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연천군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가평군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	○	-	○	-	-	-	○	-	○

주: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각 조례에 명시된 범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구체적으로 용도를 명시한 지역과 보다 큰 틀에서 용도를 명시한 지역이 있음), 위 표는 조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분한 범주에 따라 표시한 것임.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8. (양)성평등상/여성상

○ 양성평등기본법에는‘여성상’과 관련한 조항은 없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명칭, 목적, 대상 등은 <표 8>과 같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상의 명칭이 양성평등상인 시군은 10개 시군으로 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전면개정 이후 조례를 개정한 지역임. 한편, 상의 명칭이 여성상인 시군은 5개 시군이며, 수원시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후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성상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음. 이 외 의정부시는 성평등상, 안양시와 광명시는 여성발전상과 평등부부상을 수여하고 있음.

○ 수상대상은 상의 명칭이 양성평등상인 지역 중 8개 지역은 시민/사람이며, 시흥시는 시민, 공무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용인시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 한편, 상의 명칭이 여성상인 5개 시군은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음.

○ 수상자격도 상의 명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양성평등상의 경우 주로 양성평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상함. 상을 수여하는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구체적인 수상 부문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표 8> (양)성평등상/여성상

구분	명칭	내용	부문
수원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여성상을 시상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5. 효행 부문
성남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
의정부시	성평등상	시장은 성평등 사회구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성평등상을 시상한다.	1. 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부문 4. 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부문

구분	명칭	내용	부문
안양시	여성발전상 평등부부상	시장은 매년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여성발전상, 인격적 평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과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 부부에게는 평등부부상을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천시	-	-	-
광명시	여성발전상 평등부부상	시장은 매년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여성발전상, 인격적 평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과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 부부에게는 평등부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
평택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평택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1.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동두천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동두천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① 일과가정의 양립 활성화 부문 ② 양성평등 실현 부문 ③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안산시	여성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안산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
고양시	-	-	-
과천시	-	-	-
구리시	-	-	-
남양주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을 부문별로 선발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
오산시	-	-	-
시흥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평등상을 줄 수 있다.	-
군포시	-	-	-

구분	명칭	내용	부문
의왕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
하남시	-	-	-
용인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양성평등상을 시상하여야 한다.	-
과주시	-	-	-
이천시	여성상	시장은 평소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남녀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복지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 및 덕행의 근본인 효를 적극 실천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이천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효행 및 훌륭한 어머니,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분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성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안성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
김포시	-	-	-
화성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여성상을 시상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5. 효행 부문
광주시	-	-	-
양주시	-	-	-
포천시	-	-	-
여주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남다른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

구분	명칭	내용	부문
연천군	양성평등상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양성평등상을 시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평군	양성평등상	군수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가평군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1. 양성평등부문 :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사회봉사부문 : 여성사회봉사활동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3. 평등가정부문 : 양성평등가정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양평군	-	-	-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7. 12. 검색).

9. 나가며

○ 일반적으로 조례는 중앙정부의 기본법을 준용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부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서영주 외, 2011).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본법 제정은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실제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개정 된 이후 조례를 개정한 시군의 경우 대부분이 조례명을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고, 기본법을 준용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경기도 조례 개정과정과 그 내용

- 박옥분 I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과정과 그 내용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

1. 시작하며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건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으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한다는 비판도 적잖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공식사회의 관점이 정책 집행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성학과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래 법 취지에 맞게 법률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첫 돌을 맞은 양성평등기본법은 또 한 번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현재 경기도의 여성국과 관련 공무원들은 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정책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면서 ‘양성평등’의 의미를 남녀의 수량적 평등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4G(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와 관련하여서도 남녀 동수의 참여의 집행결과를 내오는 것이 목적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더 고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군단위의 집행에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도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2. 경기도 성평등 조례개정 과정 및 내용

지난 11월24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12월 15일 본회의 대표발의 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경기도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2000년에 1월에 처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2009년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됨에 따라 2015년 7월에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는 경기도형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도는 상위법령과는 다르게 보다 발전적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와 협의 하에 조례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경기여성네트워크⁷⁾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수정보완을 거듭하면서 조례안을 완성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서 및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있다하더라도 조례는 그와 무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단체들의 의견과 법무담당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한 조례제정 과정에서 민관의 합의(경기도의회, 여성단체, 소관부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는 데에서 모범적인 조례입안의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기도 내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고려하되 경기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제3의성을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1) 주요내용

□ 경기도 성평등조례 구조

7)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제1조 목적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적극적 조치	제2조 정의 제4조 도의 책무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제18조)	제6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기능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회의 제14조 전문위원회 제17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7조 성평등위원회 제9조 구성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임무
제3장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제19조~제25조)	제19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21조 성인지 통계 제23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25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22조 성인지 교육 제24조 성평등대상
제4장 경기도성평등기금 (제26조~제32조)	제26조 기금의 설치 등 제28조 기금의 관리 제30조 회계공무원 제32조 관계 규정의 적용 등	제27조 기금의 용도 제2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31조 결산 및 보고
제5장 보칙 (제33조~제35조)	제33조 사무의 위탁 제35조 시행규칙	제34조 수당 등

□ 용어의 정의

○ 상위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양성평등’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준다는 의미에 한정된 반면, ‘성평등’은 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성별의 차이로 차별하지 않되, 남녀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음.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평등이란 용어로 정의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 거버넌스의 구성·운영

○ 최근 대두되고 있는 뉴거버넌스는 정부우위적인 불평등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 상호간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임

○ 도정 운영에 있어서도 뉴거버넌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성평등 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정책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시·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안 제6조) :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4.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p>제6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특성에 맞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p>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평등정책 조정회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 등 기존위원회를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함.

○ 실효성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구성,운영 도모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⁸⁾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두어 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자문·협의 등을 진행함에 있어 책임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⁹⁾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

8)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는 기구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성주류화, 자금운영, 여성일자리, 여성안전)되며, 분야별 의제(자금운영 등)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는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9) 전문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의 분야별 소관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슈 발생 시에 수시로 별도 임기 없이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이슈별로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함

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장 및 복지여성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가족정책 관련 전문가 2. 도의회 의원 <p>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9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p> <p>② -----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실장, 복지여성실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한다.</p> <p>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12명 이내로 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거나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p> <p>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이 하며, 회의운영 및 간사, 서기 등</p>	<p>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관련조항을 따른다.</p> <p>⑥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신 설>	<p>제14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성평등정책의 자문·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p>

□ 4G(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반영

○ 성주류화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로서 4G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9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지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p>

현행	개정안
	<p>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신설>	제2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성인지 교육) 도지사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경기도의 성평등정책 보다 효과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평등정책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만큼

현황	개정안
<개정>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 이라 한다)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개정></p>	<p>제23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u>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제17조에 따른 <u>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u>으로 한다.</p> <p>③ <u>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등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④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4조(성평등대상) ① <u>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초자치단체에게 성평등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u></p> <p>② 그 밖에 성평등대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5조(단체에 대한 지원) <u>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u></p>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 2.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보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
<p><개정></p>	<p><u>제27조(기금의 용도)</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출산 · 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 다시 요약해 보면

○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개정·신설함(안 제3조)

○ 도지사 등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6조)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사항 등을 신설함(안 제7조~12조)

○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성평등정책의 지문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담당팀장을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23조)

○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기초자치단체 및 개인에게 성평등대상을 시상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32조)

3. 경기도 성평등 조례 추진방향

□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시민사회가 정책추진의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구축해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행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평등정책 조정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위원회 을 구성함. 성평등위원회에는 경기도청,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정 전반의 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성평등지수 관리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관련 조항이 신설됨.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게 됨.

○ 이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는 향후 지역의 성평등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지

표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 따라서 경기도에서 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양성평등정책 주무부서의 위상 제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함.

○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의 조직기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주무부서의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기반 강화가 요구됨.

□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

○ 공무원 대상 성평등교육 확대: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고위·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해야 함.

○ 도의회의 성 인지력 향상 제고: 양성평등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수행이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남녀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법안 및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 인지 교육이 필요함.

○ 각종 위원회 위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추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행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의사결정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위원들이 양성평등 관점이 부재하다면 양성평등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어려움.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적극적 조치를 통한 양성평등 참여 확대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동 분야의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현황을 분석해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직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분야별로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여성지위가 현저히 낮은 영역에서 여성특화 접근 유지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다수의 조항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 특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향후 여성특화 전략과 성 주류화 전략의 동시 추진하는 쌍둥이 전략을 병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고용과 정치참여 등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특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지원

○ 경기도 지역의 성평등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의 성평등정책이 균등하게 발전되어야 함.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일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양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관심, 지원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가 성평등대상을 수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 제고는 물론, 시·군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성평등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성평등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교육지원 강화

○ 양성평등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결과 여성은 물론 남성, 가족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성평등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더 나아가 도민들이 성평등정책의 파트너로서 비판·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지원을 확대함. 이를 위해 교육대상별로 특성화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함. 또한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함.

4. 마치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시군단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기본조례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동수의 참여의 집행결과를 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시·군 조례의 방향

- 권미나 I 경기도의회 의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시·군 조례의 방향

권미나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는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박선영 박사의 발제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개정과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지역의 성평등문화 확산과 성평등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정형옥 박사의 발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음에 발표될 고양시 사례 외에 나머지 17개의 시군이 각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였는지 궁금하다. 그 이유는 각 시군은 지역마다 성평등의 수준이 다르고, 정책의 영역별로 문제와 해법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성평등의식이 미흡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조례에 성평등위원의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조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한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상’의 부문에 ‘효행’이나 ‘훌륭한 어머니’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도 3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지역에서는 전통사회의 효부나 절부 이데올로기를 미풍양속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수준을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이나 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저출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 가족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는 한, 성차별의 문제, 현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경시의 문제는 가족문제에 가려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희석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의원과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젠더전문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소통과 논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성평등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민관거버넌스 개정 추진

- 정미자 I 고양시 여성정책 팀장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민관거버넌스 개정 추진

정미자 (고양시 여성정책팀장)

□ 조례개정 취지

○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 (2015.7.1.)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민관 거버넌스 조례 개정 추진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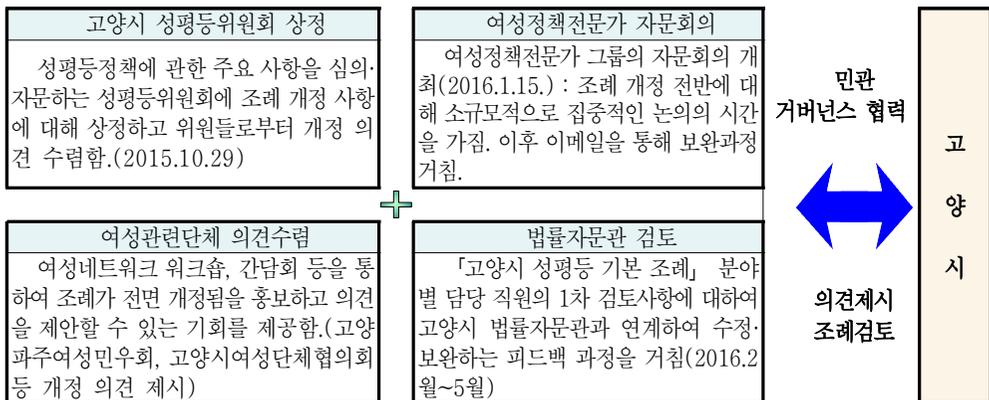
○ 추진 배경

• 의견 수렴의 과정에 성평등위원회 위원, 여성정책전문가 등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각 단체 및 기관, 법률자문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기회 제공하고자 함.

• 고양시 여성단체 중 대표성을 지니는 단체와 기관(여성단체, 상담시설, 가족지원 시설 등)의 대표 및 활동가들의 정책 욕구를 수렴하고자 함.

○ 추진 과정



※ 여성정책전문가 자문회의 쟁점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명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인지, 기존의 “성평등”으로 유지할 것인지 논의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전부터 고양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성평등 기본 조례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해당 조례명이 상위법의 취지를 반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기로 결정.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시행 : 2016. 7. 5.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주요 내용

○ 추진체계와 구성 세분화 (개정 전 : 5장, 47조→개정 9장, 50조)

제1장 총칙,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성평등정책 촉진, 제4장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제5장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7장 성평등위원회, 제8장 성평등기금, 제9장 보칙

○ 성평등정책 촉진과 성평등 의식 제고

-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해서, “제3장 성평등정책 촉진”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의 내용을 규정함.

제3장 성평등정책 촉진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제4장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구성하고,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등의 내용을 규정함.

제4장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제17조(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정착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정착을 위해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구성하고 여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여성친화협의체와 여성친화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의 내용을 규정함.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5조(여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여성친화적 지역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협치가
필요한 지점이다.**

- 이정아 I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협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재논의 확대 및 지역별 조례개정이 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각 시군별 여성발전/양성평등기본조례가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 행정단위의 절대적 이해와 의지에 더해 시민참여 또한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지역활동경험
을 갖고 있는 여성 참여는 조례의 행간 수정을 넘어 실제 정책적 실현으로 이어지는데 분명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고양시 여성가족과 팀장께서 밝혔듯이 고양시 사례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도 있을
듯 하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양시는 여성정책과제 발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추진 및
해당분야 교육, 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 및 관련사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여성정책전문가를 영입
해 3년 전부터 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 여성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열
린 시각이 배경이 되고 있음이다.

박선영(한국여성정책선임 연구위원)님이 발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여성정책을, 여성발전
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으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었던 기존 제도에 대해 오랜 시간 여성운동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경로와 쟁의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제명으로 놓여졌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수 없고 문제의 소지
는 존재하지만 운동의 성과가 이렇듯 성적 다양성은 배제된 채 양성을 저울에 올려 수평적 유
지를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당황스럽고 난감하며 결국엔 또 하나의 운동

과제가 주어진 셈이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여기에는 정미자 팀장께서 말씀하신 민관거버넌스 체계가 미약하나마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기까지의 중요한 목적과 배경 즉, 성주류화 정책의 체계화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이해가 뒤따를 수 있었고 단지 용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논의 과정 속에 담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 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명 유지, 조례 전문에 걸쳐 성평등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에 대한 조항이 신설(제18조)되었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을 성평등 관련사업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추진/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모든 부서의 장은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를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사업이나 추정금액 1억 이상의 공사 시 계획의 수립부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1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장을 실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을 맡기는 등 국과별 생길 수 밖에 없는 유리벽을 넘나들며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전초기지는 교육현장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민참여형 교육들 중 특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는 수업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여성들로주민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 어머니 폴리스단,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등등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업의 핵심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참여를 확장해내는데 있다. 공공정책의 특성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당연하다. 이것을 일정부분 지역조례 특히 성평등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수업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찾아지는 정책 아이디어는 다시 행정에 전달되는 과정도 포함되어있다. 물론 모든 것이 당장 정책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책과제발굴 및 전달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의지까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 부분이 행정현장에서는 소극적 협치의 경험이 되며 때로는 여론 형성층이 되기도 한다. 즉 지지기반이자 저항선이 되어주

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협치 방식으로 고양시여성네트워크를 소개한다.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네트워크로 특징은 진보 보수, 연령과 단체별 정체성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결합방식이 자칫 느슨할 수 있으나 다양한 삶의 이력과 다른 영역의 활동을 공유하고 간접경험을 통해 활동방식에 대한 이해와 교차되는 지점에서 맞아떨어지는 동질감은 지역 내 여성참여구조의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일산서구 청사 건립과 관련 설계과정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토론하여 친환경적인 설계에 바탕할 것, 지역 주민 커뮤니티공간 확보, 주차공간이 지역주민들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원스톱 행정지원시스템 반영, 여성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고 이는 설계에 부분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것은 공육과 적극적 참여의 동기가 함께 일어나는 중요한 지점이다. 공무원 역시 인식전환이 일어나는 지점과 일치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험이 쌓일 때 제도개선이 좀 더 질적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고 여성의 삶이 투영된 아이디어들은 흘러들어버릴 민원성 하소연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Memo



Memo